

『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』 시행
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된다.

- 특 별 법 : 2012.3.9 시행/ 2011.3.8 제정
- 시 행 령 : 2012.3.9 시행/ 2012.3.9 제정
- 시행규칙 : 2012.3.17시행/ 2012.3.9 제정

일명 초고층 특별법이라고 하는 이법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그 주요내용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, 총괄재난관리자 지정·운영, 종합방재실의 설치·운영 및 피난안전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.

□ 적용대상

1. 초고층 건축물(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)
2. 지하연계 복합건축물(①,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)
 - ①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
 - ② 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유원시설업, 종합병원, 요양병원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

□ 이행사항

1. 사전재난영향성검토
2.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·시행
3. 총괄재난관리자 지정
4. 종합방재실의 설치·운영
5. 피난안전구역의 설치
6. 통합안전점검의 실시
7.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
8. 유해·위험물질의 관리
9. 설계도서의 비치
10. 초기대응대의 구성·운영
11. 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
12. 대피 및 피난유도

□ 주요 이행사항의 내용

1. 사전 재난영향성 검토 내용

-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계획
- 내진설계 및 계층설비 설치계획
- 공간구조 및 배치계획
-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, 피난유도계획
- 소방설비·방화구획, 방연·배연 및 제연계획,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
-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
- 방법·보안,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
-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
- 해일 대비·대응계획
- 대테러 설계계획
- 관계지역 대지경사 및 주변현황
- 관계지역 전기, 통신, 가스, 상하수도시설 등의 매설현황

2. 총괄재난관리자 지정

- 역할 : 재난·안전관리 업무를 총괄·관리
- 자격 : 건축사, 안전관리 기술사, 특급소방안전관리자 등

3. 종합방재실의 설치·운영

- 개수 : 1개 이상(100층 이상의 건축물은 추가 또는 보조 설치)
- 위치 : 1층 또는 피난층
- 면적 : 20㎡ 이상
- 인원 : 상주 3인 이상
- 설비 등 : 조명설비, 급·배수설비, CCTV 등

4. 피난안전구역의 설치

건축법에서는 피난안전구역을 ‘건축물의 피난·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’으로 정의하고 있으나, 초고층 특별법은 필요한 각 층별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의미로 건축법과 초고층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.

〈표〉 건축법과 초고층 특별법의 피난안전구역 비교

구분	건축법	초고층 특별법
설치기준	1. 초고층 건축물(50층 이상) → 30층마다 1개소 이상 2. 준초고층 건축물(30층-49층) → 1/2 해당층±5층에 1개소 이상 (단, 피난계단 폭 1.5m 이상의 경우 제외)	1. 초고층 건축물(지상층) 2. 16층-29층의 지하연계 건축물(지상층) → 거주밀도 1.5명/㎡ 초과층 : 해당층 면적의 1/10 3. 초고층 건축물 등의 지하층 (문화집회시설 등의 용도일 경우) → (수용인원×0.1)×0.28㎡ → 혹은 선큰가든 설치
설비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별피난계단 설치 ○ 아래, 윗층에 단열재 설치 ○ 내장재는 불연재 설치 ○ 거실높이 2.1m 이상 ○ 비상용승강기 설치 ○ 급수전, 조명설비 설치 ○ 경보 및 통신시설 설치 ○ 배연설비 설치 ○ 소방 등 재난관리설비 설치 	[소방 등 재난관리설비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화설비(소화기, 옥내, SP) ○ 경보설비(자동화재탐지설비) ○ 피난설비(공기호흡기, 비상조명등 등) ○ 소화활동설비(제연설비, 무선통신보조) ○ 심폐소생술용 응급장비 ○ 방독면

정리 : KFPA 이유식 감사실장